

경기콘텐츠진흥원 장애인 청년인턴(체험형) 채용 공고

장애인 청년의 일자리 진입을 돕기 위한 경기콘텐츠진흥원 장애인 청년인턴(체험형)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공공기관 일경험을 통해 직무능력을 키우고자 하는 장애인 청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6. 07. 09.
경기콘텐츠진흥원장

I 채용개요

채용분야	채용인원	업무내용	채용기간	근무지
장애인 청년인턴	1	○ 서부경기문화창조허브 공간 운영 관리 - 공간 예약 관리, 방문자 응대, 기기 대여 등 데스크 업무	채용일 (26.08.10.예정) ~ 26.12.31.	부천 본원

II 응시자격

구 분	주 요 내 용
일반요건	•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 장애인 청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 제3조에 해당하는 자
기타요건	• 인사 관련 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결격사유는 Ⅷ. 기타 유의사항 참조

III 근무조건

구 분	주 요 내 용
근로계약	• 계약기간 : 채용일~2026.12.31. • 근무일 : 월~금, 주 5일 • 근무시간 : 1일 4시간 근무(근무시간 13:00~17:30 / 휴게시간 15:00~15:30)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름
근무지	• 경기도 부천시(경기콘텐츠진흥원 부천 본원)
보 수	• 보수: (통상임금 기준) 월 1,311,690원 ※ 경기도 '26년 생활임금 준용(시급 12,552원) • 경기도 공정수당 별도 지급 ※ 주 20시간, 5~6개월 근무 기준 588,500원(근무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복 지	• 복지포인트 지급 등
기타사항	•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IV 전형절차 및 일정

○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

- 심사대상 : 인턴지원서 접수자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은 경우, 공고 기간을 1주 간 연장함. 공고기간 연장 후에도 추가 지원자가 없는 경우 해당 응시자를 대상으로 전형 진행
- 선발인원 : 지원자격 요건 적부심사 후 부적격자 제외 선발

2차 면접전형

- 심사대상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선발인원 : 최고득점자를 채용후보자로 선발하며, 차순위자는 예비후보자로 선발
- 면접방식 : 다대다 질의응답형 면접(1인당 10분 내외 소요)
- 평가기준

항 목	배 점	비 고
계	100	
참여의지 및 성실성	20	
직무 적합성	20	
의사소통 및 적응력	20	
문제해결능력	20	
성장 가능성	20	

○ 전형일정 ※ 하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시 사전 공지함

구 분	일 시	비 고
모집공고	26.07.09.(목)	• 경기도청 및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클린아이 잡플러스 등
접수기간	26.07.09.(목) ~ 26.07.20.(월) 18:00	• 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recruit@gcon.or.kr) •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자사양식) 등 • 문 의 처 : 032-623-8014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6.07.23.(목)	• 개별 통보
면접전형 (부천본원)	26.07.29.(수)	• 구체적인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 V. 제출서류 참조하여 면접 당일 현장 제출 必
최종합격자 발표	26.08.03.(월)	• 개별 통보

구 분	제출 시점	제출내용		제출방법
기간제 근로자	입사 지원시	필수 제출	① 인턴 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첨부양식) ②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③ 장애인 증명서(또는 복지카드) 사본 ④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이메일 제출 recruit@gcon.or.kr *파일명 : 청년인턴_이름 (예 : 청년인턴_홍길동)
		선택 제출 (해당시)	① 가점항목 증명 서류	
	면접 대상자	필수 제출	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② (해당자) 경력증명서	면접 당일 현장 제출
		선택 제출 (해당시)	① 자격증 및 어학능력 등 증빙서류 ②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새터민 증명서 등	

※ 서류 제출 관련 유의사항

- ①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되므로 필수제출 서류 외에는 면접일에 제출
- ② 필수서류 미제출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③ 각 보험가입 증명서 등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문서는 앞자리 생년월일만 표시되도록 하여 제출
- ④ 응시원서에 학교명, 연령, 가족사항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기재하지 말 것
- ⑤ 외국어로 기재된 학력/경력증명서는 반드시 한글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

※ 경력증명 관련 유의사항

- ① 경력증명서 및 객관적 입증자료에 의하여 증명가능한 사항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경력 불인정
 - 객관적 입증자료 : 4대보험 납부기록, 사업주의 경우 사업자 등록, 폐업사실 확인서 등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가입증명은 '각 관리공단 홈페이지>전자민원>가입증명서'에서 발급받아 제출
- ② 파트타임, 일용직, 단순 회원 활동 등 비상근 위촉기간 등은 불인정
- ③ 경력증명서 명기(明記)사항
 - 근무처별 담당업무 및 업무별 근무기간, 근무당시 직책 기재
 - 정규직/계약직/비상근 구분 기재
 - 발급기관 담당자 연락처(성명/전화번호 등)를 반드시 표기

구 분	우대사항
배점 외 가산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 시험(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부여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생존 장병 ☞ 각 시험(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시험(과목)별 득점에 각 시험(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본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따라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 비율은 직접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 등에서 확인해야 함 • 북한이탈주민 : 시험(과목)별 만점의 5% 부여 ☞ 접수 마감일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는 자 ※ 가산점은 시험(과목)별 만점 배점 외로 추가 가산되며,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해 적용함 ※ 가점사항이 중복되는 경우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유형(최고 점수) 1개만 적용함 ※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과목)인 경우 가산점 적용을 제외함
가산점 부여하지 않는 우대사항	• 컴퓨터 프로그램(엑셀 및 한글) 사용 및 전화 업무 가능자

○ 응시자격 중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 결격사유가 채용 후에 확인될 경우라도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비위채용자는 즉시 합격을 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최소 5년 이상 응시를 제한합니다.

-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서 채용절차 전체 과정에서 응시자의 학교명, 연령, 출신지, 신체조건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으며, 응시자는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해서는 안됩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 등은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제82조)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지원 시 사전 확인합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본 채용의 서류접수는 이메일 접수로만 이루어지며, 접수마감일 **오후 18:00**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합니다.
- 합격자 발표 후 또는 채용 후에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면접 시 제출하신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반환청구 신청기간 내 청구분에 한해 반환하고, 청구기간 이후에는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으며 채용대상자 외 서류는 파기합니다.
 - 반환청구 신청기간 : 채용완료시점으로부터 근무일 기준 14일 간
 - 반환청구 신청방법 : 반환청구서를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거나, 스캔본을 이메일(return@gcon.or.kr)로 제출(제출방법 택1)
(주소 :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198번길 18, 202동 9층 경기콘텐츠진흥원 인사담당자 앞)
 - 반환방법 : 구인자 비용부담의 등기우편물 또는 직접 방문수령
- 「지방출자출연법」 제15조의2 등 관련규정에 따라,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추가 시험의 실시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내규에 따라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담당업무와 근무지는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채용 관련 문의사항은 표시된 문의처(032-623-8014)로 문의 바랍니다.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재단법인 경기콘텐츠진흥원 귀하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